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3. 9. 15(금) 10:00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
(의회사무국 소관)



의회운영위원회

전문위원

#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

## 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2360호
-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회부일자 : 2023. 9. 5.

## 2.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- 지방재정법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## 3.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(총괄)

최종예산 : 818,764백만원(일반 785,954백만원 특별 32,810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구	분	예산액	기 정 액				2회추경 (안)	비고
			소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1차추경		
계		818,764	734,969	710,356	21,883	2,729	83,795	
일반회계		785,954	711,466	687,067	21,669	2,729	74,488	
특별회계		32,810	23,503	23,289	214	0	9,307	
	의료급여기금	682	590	590	0	0	92	
	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	591	591	591	0	0	0	
	주차장	31,537	22,322	22,108	214	0	9,215	

## 4.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

###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	기정액	2회추경(안)			비고
				계	증액	감액	
계		4,047,574	4,378,308	△330,734	15,000	△345,734	

- 기정예산 43억 7,830만 8천원 대비 3억 3,073만 4천원 감액(7.6%)된 40억 4,757만 4천원으로,

### 세부사업별 현황

(단위 : 천원)

세부사업명		최종예산 (①+②)	기정액 (①)	예산(안) (②)
편성목	주요내용			
계		4,047,574	4,378,308	△330,734
구의회 청사관리		123,578	108,578	15,000
자산취득비	자산및물품취득비(구의회 청사 집기 등 구매 및 교체)	55,000	40,000	15,000
의회비 지원		802,297	810,397	△8,100
의회비	의원국민연금부담금(의원국민연금 부담금)	8,100	16,200	△8,100
인력운영비		2,708,339	3,030,349	△322,010
인건비	보수(기본급, 수당)	1,600,458	1,843,535	△243,077
	기타직보수(일반임기제 7명)	454,320	512,398	△58,078
포상금	성과상여금(호봉제 성과상여금)	58,059	78,914	△20,855
기본경비		104,113	119,737	△15,624
여비	국내여비(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)	15,624	31,248	△15,624

## 5. 검토의견

- 의회사무국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,
  - 구의회 본회의장의 노후화된 음향 장비를 정비하고자 자산취득비를 증액하고,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대상자 축소에 따른 의회비 감액 및 파견직원 보수 소속기관 지급, 정책지원관 일부 채용시기 조정에 따른 잔액, 직원 성과상여금 잔액 발생으로 인건비와 포상금을 감액하였으며, 또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직원 출장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비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,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적정하게 예산 편성되었다고 사료됨.

# 관계법령

## 『지방자치법』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###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② 제1항에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## 『지방재정법』

[시행 2023. 5. 16.] [법률 제19031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###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[전문개정 2011.8.4.]